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6. 25.(수) 11:00 < 6.26.(목) 조간 > 배포 2025. 6. 25.(수)

산업·에너지 ODA,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

- 산업부, 「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개정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"산업·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(ODA)"('25년 1,326억원)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산업·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(ODA) 운영요령」(산업부예규 제141호)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
산업·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(ODA)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'보조금'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나, 2025년 1월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*하면서 '출연사업'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.

*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27조제1항제7호에 국제개발협력사업("산업·에너지 ODA 사업")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의 고유사업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중 하나로 명시

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,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.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, 산업부는 산업·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.

<주요 개정 내용>

구분	개정 항목	개정 내용	
		기존	개정
1.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	① 근거 법령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」	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	② 예산 비목	국고보조금	출연금
	③ 관리시스템	보조금 시스템(e-나라도움)	출연금 시스템(RCMS) 과제관리시스템(K-PASS)
2. 사업절차 개선	① 사업관리 강화	(신설)	문제사업 특별평가 및 제재 조치
	② 사후관리 확대	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	사업 종료일로부터 7년

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·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,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“산업·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(ODA)”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으며,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otie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근용 (044-203-56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윤주 (044-203-5681)
			주무관	박선화 (044-203-567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개정('25.1.21 공포) 개요

□ 개정 배경

○ 산업부는 「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**운영요령(예규)」에 따라 산업·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(ODA)을 추진**하고 있으며,

- **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KIAT)을 전담기관**으로 지정하여 **국고보조금**으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

- 한국국제협력단 등 **다수의 ODA 사업을 전담하는 출연기관**들은 **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**하고 있는 반면,

 · **KIAT**는 **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상 출연기관**임에도 「보조금관리법」 예외 규정을 근거로 **국고보조금으로 ODA 사업**을 추진 중임

○ 동 법률개정안은 ①**출연기관**인 **KIAT**가 **ODA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**하고, 사업 예산을 보조금이 아니라 **출연금으로 전환**하여 ②**보다 효과적인 ODA 지원체계를 구축**하려는 것임

□ 주요 내용

○ **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(ODA)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(ODA) 법적 근거 조항 신설**(제27호제1항제7호)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
제27조(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·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·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	제27조(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) ①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

참고2 「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개정 내용

□ 주요 개정내용

구분	개정 항목	개정 내용
1.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	1 근거 법령 변경 - 제1조(목적)	(기존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(변경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	2 비목 변경 - 별표2,3(사업비 사용·산정·회수 기준)	(기존) 보조금 기반 (변경) 출연금 기반
	3 출연금 관리시스템 사용 원칙 - 제2조(용어 정의) - 제18조(협약의 체결) - 제20조(사업비의 지급) - 제21조(협약의 변경)	(기존) 보조금 운영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 사용 (변경) 출연금 사업비관리시스템(RCMS), 과제관리시스템(K-PASS) 사용을 원칙으로 개정
	4 기타 조항 - 제37조(제재조치) 신설	(기존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조치 (변경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상 제재처분 근거 無, 「공공재정환수법」 및 수행기행과의 협약에 근거한 제재조치 조항 신설
2. 사업절차 개선	1 문제사업 관리 강화 - 제34조(특별평가) : 문제 과제 대상 특별평가 조항 신설 - 제37조(제재조치) : 협약 위반의 경우, 제재 조항 신설	(기존) 사업수행 결과평가 '중단' 시 협약 해약 (변경) 특별평가 개최 대상, 세부 조치사항 등 신설
		(기존) 사업수행 결과평가 '중단' 시 협약 해약 (변경) 참여제한, 환수, 경고, 제재부가금 등 제재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
	2 사후관리 대상 확대 및 관리 기준 명확화 - 제38조(사후관리)	(기존)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(프로젝트), 2년(기타) (변경) 사업 종료일로부터 7년(프로젝트), 5년(기타)